[사 건 명] 행심 2018 - 51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07.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Ⅰ.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고등학교 학생이고, 피해학생 ◍◍◍은 ◉◉중학교 학생으로, 2018. 6.경 발생한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하여 2018. 7. 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가 열렸고, 그 결과 피청구인은 2018. 7. 17. 청구인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처분 조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 2018. 10. 12. 이 사건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Ⅱ.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측은 6월 12일 사안 발생 후 거의 한달 뒤에 학폭위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에 화해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학교 측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학폭위 당일에 참석하라고만 하였으며, 청구인은 학폭위 사전준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참석하였다. 학폭위에서 청구인이 단체대화방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대화내용에 관한 것은 개인정보라 말해줄 수 없다며 거절당했고, 청구인측은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없었으며 방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나. 피해학생 ◍◍◍은 당시 가출상태에서 부모님께 혼날 것을 피하고자 형들이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아 신고한 것이고, 피해학생 ◍◍◍이 어린 학생들의 돈을 빼앗는다는 것을 알게 된 청구인은 잘못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개입했던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해학생 ◍◍◍이 빼앗아 간 돈과 널디라는 점퍼를 가져오라고 한 것인데 학폭위에서는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한 것처럼 몰아갔고, 처분 받을 만한 행위를 청구인이 했는지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냉정한 판단에 의하지 않고 단체기합을 주듯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라. 처음에는 피해학생 측에서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아 자체 종결되었고, 별도로 추가사안(▥▥▥ 학생 개입)이 발생하여 피해학생 측에서 학폭위 개최 요구가 있자 본 사건의 학폭위가 개최되었는데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른 조치 결과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

마. 학폭위 개최 전 적극적 사과와 화해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정도는 매우높음(0점)인 것에 비해 화해정도를 낮음(3점)으로 판단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행위는 잘못된 행동 바로잡기를 가장한 협박이다. 게다가 청구인은 피해학생 ◍◍◍의 친구에게도 ‘내일 ○○ 깐새끼 안데꼬오면 걍 니가 총대메는거니까 무조건데꼬와’ 라는 말도 남겼다.

나. 청구인이 메신저를 통해 ‘말 시키는 거만 해 븅신아 쳐맞기 싫으면’, ‘널디까지 10 받아줄게’, ‘야 왜답아떠 시발럼아’, ‘왜 제껴 자꾸 뒤질래?’, ‘내일 ◎◎고 앞으로 와라’ 라고 한 것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 포함 2명의 고등학생 형들의 말에 피해학생 ◍◍◍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껴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고, 학교 친구들과도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치료도 받았

다.

라. 20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가이드북에 따르면 자체 종결된 사안이더라도 학생(학부모)이 학폭위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개최한 것이고, 청구인의 학교폭력 정도가 ▥▥▥ 학생(전학조치 재심 인용결정에 따라 출석정지로 감경)보다 약해서 청구인에게 더 가벼운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마. 청구인은 제2호 조치가 과하다고 주장하나,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판정점수는 5점으로 제3호 조치를 받아야 하지만 청구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할 의사가 있는 등 선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감해준 것이다.

바. 청구인이 사과와 화해 의사를 적극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화해가 실질적으로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해정도를 낮음으로 판정한 것이며, 자치위원회 당시 청구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고 위원들은 반성정도를 매우높음으로 판단하였고, 반성정도와 화해정도를 판단하는 요령이 서로 다르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근거 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2.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이전에 이전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피해학생 ◍◍◍ 학생이 같은 학교 1학년 김우진 학생의 금품을 갈취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과 ◭◭◭은 2018. 6.경 페이스북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학생 ◍◍◍을 초대하여 갈취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말 시키는 거만 해 븅신아 쳐맞기 싫으면’, ‘널디까지 10 받아줄게’, ‘야 왜답아떠 시발럼아’, ‘왜 제껴 자꾸 뒤질래?’, ‘내일 ◎◎고 앞으로 와라’라는 말을 하였다.

나.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학생 ◍◍◍은 2018. 6. 12. 재학 중인 ◉◉중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중학교에서 ‘접촉금지’ 긴급조치를 요청하였으며 2018. 6. 19. ◎◎고등학교 학폭위에서 이를 추인하였다.

다. 2018. 06. 20. 피해학생 측에서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아 학교장 자체 종결하였으나, 2018. 06. 29. 피해학생 측의 학폭위 개최 요구로 2018. 07. 12. ◎◎고등학교 학폭위를 개최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여부

청구인은 처음에는 피해학생 측에서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아 자체 종결되었는데, 이후 다시 학폭위를 열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이 증거가 없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오신고였던 경우, 학교폭력 의심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등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학교장 자체 종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해학생 측의 학폭위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장 자체 종결 이후 피해학생 측의 학폭위 개최 요구로 열린 이 사건 학폭위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위 법률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이 페이스북 채팅방에서 피해학생 ◍◍◍에게 ◍◍◍이 다른 학생에게 갈취한 돈을 돌려달라고 대화하는 중에 '말 시키는 거만 해 븅신아 쳐맞기 싫으면', '넬디까지 10 받아줄게', '야 왜답아떠 시발럼아', '왜 제껴 자꾸 뒤질래?', '내일 ◎◎고 앞으로 와라' 라는 말을 한 것은, 피해학생 ◍◍◍에 대한 협박 및 언어적, 정서적 폭력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피해학생 ◍◍◍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

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학폭위 개최 전 적극적 사과와 화해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정도는 매우높음(0점)인 것에 비해 화해정도를 낮음(3점)으로 판단한 것에 동의할 수 없고, 화해정도를 매우높음 0점 또는 높음 1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학생 측에 청구인 측에서 화해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해학생 측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청구인 측에 피해학생 측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결국 화해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화해는 쌍방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청구인의 화해 의사만 있을 뿐 화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기에 학폭위에서는 화해정도를 낮음으로 판정하였다.

그러나 학폭위에서는 이 같은 청구인 측의 적극적인 사과 의사를 반영하여 반성의 태도는 매우 높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반성정도를 매우높음으로 판단하였고, 더 나아가 선도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감경처분 하였다. 세부기준 총점 5점에 해당하는 처분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이나 이를 감경하여 제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한 것인데, 이는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함이 없다.

라.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Ⅴ.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